



의안번호	제 2023 - 15호
보 고 연 월 일	2023. 6. 12. (제125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 I. 제154차 전체회의 1
 - 1. 일시·장소 1
 - 2. 참석자 1
 - 3. 주요 안건 1

- II. 논의 결과 2
 - 1.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2
 - 2.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4
 - 3. 전문위원단 의견 요약 13
 - 4. 추진 일정 14

- III. 향후 일정 18

【별첨】

최형준,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 검토”
강선주, 김한울, “제9기 양형위원회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제안”

I. 제154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2023. 5. 22.(월) 16:00 ~ 18:00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3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용민, 김한울, 김현아, 김혜경, 박복순, 박성훈, 이민우,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 등 선정 검토

II. 논의 결과

1.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가. 스토킹범죄

(1) 징역형 설정 ⇨ 견해 일치

- 중대한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 시행된 이후 양형사례가 상당히 축적된 상태임
- 양형기준 설정에 대한 국민적 요청과 실무적 필요성이 모두 높음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

(2) 벌금형 ⇨ 견해 대립

(가) 제1안(제외, 8인)

- 제8기 양형위원회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에 따라 최초로 설정한 교통범죄 벌금형 양형기준이 2023. 7. 1. 시행을 앞두고 있고, 위 양형기준은 선거범죄 양형기준과 달리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고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신설된 벌금형 양형기준이 양형실무에 잘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른 범죄군에 대하여도 교통범죄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적절한 수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벌금형 양형기준의 시행 성과를 냉정하게 지켜본 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맞음
-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 신설은 중대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하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소지도 있음
- 스토킹범죄의 벌금형 비중도 약 30%에 불과하여 설정 실익 크지 않음

(나) 제2안(설정, 6인)

- 제8기 양형위원회는 2022. 3. 28. 제115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벌

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의결하여,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교통 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고 함

-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감에 있어, 양형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범죄군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 스토킹범죄의 벌금형 비중이 약 30%로 적지 않으므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나. 동물학대범죄

(1) 징역형 설정 ⇨ 견해 일치

- 동물학대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와 폭력 등 대인범죄와의 연관성이 보고됨
- 동물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없애며,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 마련 필요

(2) 벌금형 ⇨ 견해 대립

(가) 제1안(제외, 9인)

- 사람에게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벌금형 양형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먼저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어색하고 선후가 맞지 않음. 나중에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 신설은 중대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하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음
-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징역형 양형기준을 먼저 설정한 후 추후에 벌금형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함

(나) 제2안(설정, 5인)

-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에 있어, 양형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범죄군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임
- 동물보호법위반의 벌금형 비중이 75%로 높으므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

2.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가. 지식재산권범죄(징역형) ⇨ 견해 일치

- 영업비밀 국외누설 행위에 관한 법정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 기술유출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관계 기관에서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 벌금형 양형기준 제외
 - 벌금형 빈도(64.8%)가 적지는 않으나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이른바 '짜퉁 사건')에 벌금형 선고가 편중되어 있고 위 사건은 약식기소 되는 경우도 많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낮음
 - 양형기준 수정 요구는 주로 영업비밀침해나 산업기술유출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한 것이고, 위 사건은 주로 징역형이 문제되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 양형기준 설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 양형기준은 교통범죄 벌금형 양형기준의 시행 성과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맞음

나. 사기범죄(징역형) ⇨ 견해 일치

-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 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그 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양형기준 중 조직적 사기 수정

- 보이스포싱 사기, 전세사기, 보험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수정 요구가 집중되어 있고,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음 ⇨ 기왕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범죄 중에서는 조직적 사기 유형에 한해 수정
-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
 -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미설정범죄 중 사건명 기준 가장 많은 수임
 - 보험사기에 대하여는 일반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함
 - 사기범죄의 한 유형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으로 해결함이 타당
 - 징역형 양형기준 설정 필요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포싱에 관한 특별법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 높음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23. 5. 16. 개정, 2023. 11. 17. 시행 예정: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 5배 벌금(병과 가능)]를 신설
 - 사기범죄의 한 유형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으로 해결함이 타당
 - 징역형 양형기준의 설정 필요성이 높고, 위 개정안에 의하면 정액 벌금형이 아닌 범죄수익에 비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에 관해 일률적인 양형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음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제외
 - 보이스포싱 사기, 보험사기 등 중대한 조직적 사기 사건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양형 강화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번에는 중요 유형을 추가하여 징역형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경과를 보면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 교통범죄 벌금형 양형기준의 시행 성과를 지켜볼 필요도 있음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1) 징역형 양형기준 수정 ⇨ 견해 일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2019년 설정되었지만, 2020년 법정형 개정으로 권고 형량범위 수정이 필요함
- 사기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전반을 정비하는 의미가 있음

(2)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 견해 대립

(가) 제1안(제외, 9인)

- 전자금융거래법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전반을 정비하는 맥락으로 포함시키는 것인데,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강화 요청에 따라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하여만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모순적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양형 편차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형량 강화에 대한 요청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은 교통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시행 성과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제2안(포함, 5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는 벌금형의 빈도가 월등히 높는데, 이는 실무에서 보이스피싱의 공모로 기소하기 곤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독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것임. 따라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높음

(전자금융거래법 1심 선고현황, 단위 : 명)

연도	선고인원	선고유예	징역	벌금	무죄	기타
2021	5,992	13	758	5,016	75	130
2022	5,211	14	583	4,498	46	70
2023. 4.	1,739	1	151	1,551	7	29

※ 1심 선고일자 기준

※ 1심 선고 대표, 집행유예 포함

※ 기타 :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소년부송치, 이송 등

라. 마약범죄(징역형) ⇨ 견해 일치

- 마약범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사회 및 실무의 요구가 모두 높고, 양형기준의 체계적 정비도 필요한 상황임
-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 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의 변경,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정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 양형기준 제외
 - 벌금형 빈도(4.2%)가 매우 낮고, 마약범죄 형량 강화에 대한 요청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 양형기준까지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마. 성범죄(징역형) ⇨ 견해 대립

(1) 다수의견(포함)

- 성범죄는 국민적 관심이 특별히 높은 범죄군이고, 특히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의 형태를 폭행·협박 선행형과 폭행·협박 동시형(기습추행)으로 나누어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함
- 또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양형기

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새로이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들 범죄는 성범죄의 한 유형이므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으로 해결함이 타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대하여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 형량범위를 상향하였으나 2023. 2. 2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1헌가9)이 있었으므로 이번에 추행죄 전반을 수정하면서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개정 대기 후 하반기 과업으로 수행
- 한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피감독자간음, 피보호자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에 대하여도 함께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제외: 이번에는 징역형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시행경과를 보면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여부 검토 필요

(2) 소수의견(제외)

-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데, 아직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률의 개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음 → 향후 성폭력처벌법 개정 경과를 보고 추후 수정함이 타당
- 성범죄 양형기준은 7기, 8기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져 왔음. 7기 양형위원회는 균형법상 성범죄를 추가 설정했고, 8기 양형위원회에서는 법정형 변동 및 처벌규정 신설을 반영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 등 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하고 양형인자를 정비함
- 추행죄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추행죄의 형량범위를 모두 세분화하는 수정을 하여야 하는데, 8기에서 수정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공박 상태 이용 추행에 대하여 법정형 변경 등의 사정변경 없이 재차 수정을 가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3) 개별 범죄 추가 설정에 대한 의견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설정: 찬성 8인, 반대 6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설정: 찬성 10인, 반대 4인
- 피감독자간음, 피보호자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의 설정: 찬성 9인, 반대 5인

바. 위증범죄(징역형 및 벌금형) ⇨ 견해 대립

(1) 제1안(제외, 11인)

- 준수율(2021년 91.5%)이 높고, 2018년~2022년 제1심 선고 사건 기준 징역형 52.9%
- 위증·증거인멸범죄 사건 수가 2012년 1,181건이었고, 2016년에 약간 늘어난 1,365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 428건에 불과(2022년 사법연감)
- 위증범죄 양형기준의 적용범위는 ① 일반 위증(형법 제152조 제1항), ② 모해위증(형법 제152조 제2항), ③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위 법 제14조 제1항), ④ 특허법상 위증(위 법 제227조 제1항), ⑤ 실용신안법상 위증(위 법 제47조 제1항), ⑥ 디자인보호법상 위증(위 법 제83조 제1항), ⑦ 상표법상 위증(위 법 제94조 제1항)이나, 양형기준 시행 이래 위 ⑥, ⑦ 범죄의 벌금형 법정형만 변동이 있었을 뿐, 그 외에 변동이 없었음
-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이 동일한 다른 범죄와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고(예: 업무방해와 기본 同, 감경 더 높고 가중 더 낮음),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① 양형편차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지는 않았고, 준수율도 매우 높은 점, ② 사건 수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③ 양형 기준은 법정형을 기초로 설정되는데 설정 이후 법정형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낮음

(2) 제2안(포함, 3인)

- 위증범죄 양형기준은 2009. 7.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 설정, 시행한 후 2017. 4. 유사한 보호법익을 가진 증거인멸죄 양형기준을 추가하였을 뿐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 최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공판중심 주의적 형사사법절차가 강화되고 있어 법정증언의 진실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위증죄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
 -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의 특성에 맞추어 처벌불원, 이종 전과 등 특별예방적 인자들을 배제하거나 영향력을 줄이고(일반양형인자화), 일반예방적 인자들의 발굴(대상범죄의 중대성, 과급성 등) 및 영향력 강화(특별양형인자화) 필요
- 아울러 전체 선고사건 중 벌금형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벌금형 양형기준을 추가할 대상으로도 적합

(위증죄 1심 선고 현황, 단위 : 명)

연도	선고인원	선고유예	징역	벌금	무죄	기타
2021	637	-	166	418	39	14
2022	603	-	165	366	50	22
2023. 3.	172	-	38	106	8	20

※ 1심 선고일자 기준

※ 1심 선고 대표, 집행유예 포함

※ 기타 :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소년부송치, 이송 등

- 위증 사건수가 감소하였던 이유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으로 인한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인데, 현재는 직접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되어 사건 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사. 무고범죄(징역형 및 벌금형) ⇨ 견해 대립

(1) 제1안(제외, 11인)

- 준수율(2021년 96.7%)이 매우 높고, 2018년~2022년 제1심 선고 사건 기준 징역형 68.5%
- 사건 수가 2012년 1,351건이었고, 2016년에 약간 늘어난 1,511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 556건에 불과(2022년 사법연감)
- 권고 형량범위
 - 무고죄 양형기준의 적용범위는 ① 일반 무고(형법 제156조), ②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무고의 죄를 범한 경우)이고, 양형기준 시행 이래 위 각 범죄의 법정형에 변동이 없었음
 - 무고범죄 양형기준이 2009. 7. 1. 시행된 이래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는 않았으나, 양형인자에 관해 2021. 12.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적용 요건이 종전보다 더 엄격한 방향으로 수정됨
 -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이 동일한 다른 범죄와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고(예: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와 감경, 기본 同, 가중 상한 1년 더 높음),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① 양형편차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지는 않았고, 준수율도 매우 높은 점, ② 사건수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③ 성범죄 고소 등을 이유로 한 무고범죄 양형기준 강화는 자칫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우려되는 점, ④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기초로 설정되는데 설정 이후 법정형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무고범죄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낮음

(2) 제2안(포함, 3인)

- 무고범죄 양형기준은 2009. 7. 1.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 설정, 시행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 소위 '고소 공화국'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고소·고발이 남용되어 이로

인한 인권침해 등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고범죄 엄벌을 통한 정상화
요구 증대

- 벌금형의 선고비율이 상당하여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도 있음
- 집행유예 관련 양형인자 보완, 벌금형에 관한 양형기준 추가, 형량범
위 상향 등을 통해 양형기준 강화 필요

[무고범죄 1심 선고 현황1)]

선고형 연도	접수 건수	선고내역										
		합계	유기형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형의 면제	관할 위반	소년부 송치	기타
			실형	집유	실형	집유						
2010	1,893	2,103 (100)	346 (16.5)	753 (35.8)	610 (29.0)	-	24 (1.1)	140 (6.7)	1 (0.0)	-	10 (0.5)	219 (10.4)
2011	1,722	1,858 (100)	340 (18.3)	683 (36.8)	522 (28.1)	-	21 (1.1)	112 (6.0)	1 (0.1)	-	2 (0.1)	177 (9.5)
2012	1,351	1,397 (100)	250 (17.9)	483 (34.6)	395 (28.3)	-	16 (1.1)	102 (7.3)	-	-	5 (0.4)	146 (10.4)
2013	1,465	1,376 (100)	263 (19.1)	462 (33.6)	404 (29.4)	-	9 (0.7)	73 (5.3)	5 (0.4)	1 (0.1)	7 (0.5)	152 (10.9)
2014	1,411	1,459 (100)	317 (21.7)	484 (33.2)	388 (26.6)	-	17 (1.2)	99 (6.8)	3 (0.2)	-	2 (0.1)	149 (10.2)
2015	1,455	1,350 (100)	289 (21.4)	455 (33.7)	383 (28.4)	-	7 (0.5)	82 (6.1)	2 (0.1)	-	2 (0.1)	130 (9.7)
2016	1,511	1,485 (100)	304 (20.5)	498 (33.5)	404 (27.2)	-	10 (0.7)	101 (6.8)	-	-	1 (0.1)	167 (11.2)
2017	1,384	1,429 (100)	312 (21.8)	524 (36.7)	347 (24.3)	-	6 (0.4)	89 (6.2)	2 (0.1)	-	4 (0.3)	145 (10.2)
2018	1,166	1,283 (100)	318 (24.8)	403 (31.4)	277 (21.6)	2 (0.2)	11 (0.9)	107 (8.3)	1 (0.1)	-	3 (0.2)	161 (12.5)
2019	958	1,033 (100)	251 (24.3)	345 (33.4)	235 (22.7)	6 (0.6)	2 (0.2)	68 (6.6)	-	-	1 (0.1)	125 (12.1)
2020	872	814 (100)	187 (23.0)	280 (34.4)	181 (22.2)	2 (0.2)	5 (0.6)	52 (6.4)	-	2 (0.2)	3 (0.4)	102 (12.6)
2021	556	738 (100)	198 (26.9)	231 (31.3)	160 (21.7)	2 (0.3)	4 (0.5)	54 (7.3)	1 (0.1)	-	-	88 (12.0)

- 무고 사건수가 감소하였던 이유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으로 인한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것인데, 현재는 직접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되어
사건 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1) 사법연감(2011년~2022년)

3. 전문위원단 의견 요약

구분	주제	포함 자치 전문위원 의견 표명 전문위원	
설정	스토킹범죄 징역형 양형기준 설정	14/14	
	스토킹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6/14	
	동물학대범죄 징역형 양형기준 설정	14/14	
	동물학대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5/14	
	위증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3/14	
	무고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3/14	
수정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	14/14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1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14/14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14/14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설정	8/1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설정	10/14
		피감독자간음, 피보호자간음 설정	9/14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	3/14	
무고범죄 양형기준 수정	3/14		

4. 추진 일정

가. 제1안(11인)

구분	상반기	하반기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

나. 제2안(3인)

- 제1안과 달리 스토킹범죄를 하반기에 설정하자는 안

※ 참고자료(다수의견에 따른 운영지원단 작성 일정안)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23.5.9.(화)	출범식
23.5.22.(월)	23.6.12.(월)	제9기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 선정
	23.6.26.(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23.7.17.(월)	23.8.8.(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23.9.4.(월)	23.9.18.(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위, 유형 분류) 심의
23.10.23.(월)	23.11.10.(금) 워크숍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심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 범위) 심의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 량범위) 심의
23.11.24.(금)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23.12.4.(월)	24.1.8.(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 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설정안 확정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양형인 자, 집유기준) 심의 및 설정안 확정
24.2.16.(금)		공청회
24.3.11.(월)	24.3.25.(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 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 준 의결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제출 된 의견 심의 및 양형기준 의결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제 출된 의견 심의 및 양형기준 의결
24.4.15.(월)	24.4.29.(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24.5.27.(월)	24.6.17.(월)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유형 분류) 심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24.6.24.(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24.7.15.(월)	24.8.5.(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심의
24.9.9.(월)	24.9.30.(월)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심의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심의
24.10.21.(월)	24.11.1.(금) 워크숍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점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점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24.12.2.(월)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24.11.25.(월)	25.1.13.(월)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점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 점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25.2.17.(월)		공청회
25.3.10.(월)	25.3.24.(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문위원회의	양형위원회의	안건
		<p>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p> <p>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p> <p>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 심의 및 수정 양형기준 의결</p>

Ⅲ. 향후 일정

- 일시: 2023. 7. 17. (월) 오후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9기 양형위원회 상반기 설정·수정 대상 범죄 양형기준안의 구체적인 논의